

KPCS 64 45 25 : 2018

마리나선박 보급시설

2018년 4월 제정



건설기준 제·개정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기준은 발간 시점부터 사용하며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 공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건설기준 제 · 개정 연혁

- 이 기준은 건설기준 코드체계 전환에 따라 기존 건설기준(설계기준, 표준시방서)간 중복 · 상충을 비교, 검토하여 코드로 통합 정비하였다.
- 이 기준은 기존의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의 내용을 통합, 정비하여 전문시방서 시방코드로 개편한 것으로 제 ·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건설기준	주요내용	제 · 개정 (년. 월)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제정	제정 (1999.07)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 한국산업규격(KS) 및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 타 기준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공사시방서 작성요령에 따라 공종분류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보완, 개정	개정 (2005.11)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 표준시방서 개정사항과 상위 기술기준 및 타분야 기준의 변경 내용 반영, 케이슨 속채움, 상치콘크리트, 드라이 독 구조물, 자켓 기초구조물, 마리나시설 등에 대한 전문시방 내용을 신설 하여 보완	개정 (2014.04)
항만 및 어항공사 전문시방서 시방코드(KPCS 64 00 00)	• 기존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를 이원화하여 관리하던 항만 건설공사 시공기준을 표준시방서로 통합코드화하고, 특수분야 공사는 전문시방서로 별도 관리함으로써 각각의 역할과 기능 분담을 명확하게 재정립하여 코드체계로 개편	개정 (2018.04)

제 정 : 2017년 8월 16일 개 정 : 2018년 4월 17일
 심 의 : 기술자문위원회
 소 관 부 서 : 해양수산부 항만기술안전과
 관련단체 (작성기관) : 한국항만협회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범위	1
1.2 참고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제출물	1
2. 자재	1
3. 시공	1
3.1 제작, 설치 및 시공	1
3.2 구매	2

KPCS 64 45 25 마린나선박 보급시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마린나시설 중 급수시설, 급전시설, 폐데스탈, 주유시설 등 마린나선박의 보급시설의 제작, 구매, 설치, 시공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참고기준

KPCS 64 45 10 마린나시설공사일반(1.2 참고기준)에 따른다.

1.3 용어의 정의

KPCS 64 45 10 (1.3 용어의 정의)에 따른다.

1.4 제출물

KPCS 64 45 10 (1.4 제출물)에 따른다.

2. 자재

KPCS 64 45 10 (2. 자재)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설치 및 시공

- (1) 케이블, 공동구, 기타 보조설비는 부식 및 해풍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공동구 덮개는 미끄럽지 않아야 하며 상판과 높이가 같아야 한다.
- (3) 전력 케이블은 해수용으로 인증된 전력 및 통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 (4) 급전시설이 있는 경우 야간보행, 선박접안 등 안전을 위하여 조명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단, 지나친 조명이 되지 않도록 한다.
- (5) 급수 및 전력선은 해수용으로 인증된 유연한(Flexible)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6) 케이블, 배관, 공동구, 기타 보조설비는 부식 및 해풍에 강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마리나선박 보급시설

- (7) 급수배관의 재료는 KCS 64 45 00 안벽부속시설 및 기타공사에 따른다.
- (8) 영구적 설비 호스나 라인이 주잔교, 보조잔교, 연결잔교의 상판을 가로 질러서는 안 된다.

3.1.2 페데스탈(Pedestal)

- (1) 페데스탈은 해상조건에 적합한 견고한 구조와 내구성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2) 페데스탈의 소켓은 주잔교 바닥에서 최소한 300mm 높이에 설치하여야 하며 해수 유입이 되지 않는 방수소켓을 적용하여야 한다.
- (3) 페데스탈 공급자는 배전, 배수를 위한 회로도 및 설치계획서와 계량기 및 누전차단기 등에 대한 인증서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3 급유시설

- (1) 급유시설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연료가 누출되었을 때 이를 신속히 격리하여 제거할 수 있는 장비와 지킴, 자재, 약제 등이 준비되어야 한다.

3.2 구매

3.2.1 구매일반

마리나선박 보급시설 구매는 해당 설계서에 별도로 정해있지 않은 경우 이 기준에 따른다.

3.2.2 급수·급전시설

- (1) 급전과 급수는 계류보트에 충분한 양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때 보트 자체의 발전기나 급수시설은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 (2) 각 수도꼭지에는 용수 공급 라인으로 역류방지를 위한 역류방지기를 두어야 한다.
- (3) 각 용수 라인은 수도꼭지까지의 수압을 모든 수도꼭지 중 10%가 완전히 열려있다는 가정 하에 2.46kg/cm^2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 (4) 부잔교 상 모든 용수 라인의 육상 쪽 단말에는 주관으로 역류를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기를 두어야 한다.

3.2.3 페데스탈

- (1) 요트의 크기와 배치를 고려하여 페데스탈을 충분히 배치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 (2) 페데스탈 재질로는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FRP, PE 등이 있으며 대상 보트의 크기와 종류에 따라 운영 및 기능, 미관을 고려하여 적절히 선정하여야 한다.

- (3) 페데스탈이나 저장함 내의 전기단자는 해양환경에 적합하게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 (4) 전기단자나 통신 및 케이블 TV 잭 등의 설비는 상판으로부터 300mm 이상의 수직 높이를 가져야 한다.

3.2.4 급유시설

- (1) 화재 및 폭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급유시설과 급유부두는 마리나의 여타 시설 및 계류장과 이격되어 설치되어야 한다.
- (2) 급유시설이 있는 주변 육상부는 연료탱크를 묻기에 적합해야 하며 연료공급차량이 접근하기에 양호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3) 필요시 급유시설은 이용자의 편의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해상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문시방서
KPCS 64 45 25 : 2018

마리나선박 보급시설

2018년 4월 17일 발행

(관련단체)

한국항만협회

07271 서울시 영등포구 양산로 53(양평동 3가)

월드메르디앙 비즈센터 707호

☎ 02-2165-0090 E-mail : kpha@koreaports.or.kr

<http://www.koreaports.or.kr>

해양수산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항만기술안전과

☎ 044-200-5951

<http://www.mof.go.kr>